

특수건물 화재보험요율 적용방법

윤 동 혁
(본 협회 보험 2부 차장)

예 8. 호텔(공중위생법(구 숙박업법)에 규정한 호텔로 사용하는 건물)

소재지: 대전시 중구 중동 100
건물구조: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10층
보험가입금액: 1,500,000,000 원

적용
요건 { 물 건: 일반물건
등 지: 1등지
건물급수: 1급
기본요율: 0.105%
할증요율(호텔): 0.055%

계산

○ 적용요율 산출

$$\begin{matrix} 0.105\% \\ \text{(기본요율)} \end{matrix} + \begin{matrix} 0.055\% \\ \text{(호텔할증)} \end{matrix} = \begin{matrix} 0.16\% \\ \text{(적용요율)} \end{matrix}$$

○ 화재보험료:

$$1,500,000,000 \text{ 원} \times 0.16\% \times 90\% \quad \text{(특수건물할인 10\%)}$$

$$= 2,160,000 \text{ 원} \dots\dots\dots (1)$$

○ 신체보험료: 화재보험료의 14%

$$2,160,000 \text{ 원} \times 14\% = 302,400 \text{ 원} \dots\dots\dots (2)$$

○ 총보험료: (1)+(2)

$$2,160,000 \text{ 원} + 302,400 \text{ 원} = 2,462,400 \text{ 원}$$

예 9. 시설강습소(시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시설강습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30㎡ 이상인 건물)

소재지: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10
건물구조: 세멘 벽돌조 2층
보험가입금액: 120,000,000 원

적용
요건 { 물 건: 일반물건
등 지: 2등지
건물급수: 3급
기본요율: 0.351%
할증요율: 없음

계산

○ 화재보험료:

$$120,000,000 \text{ 원} \times 0.351\% \times 70\% \quad \text{(특수건물할인 30\%)}$$

$$= 294,840 \text{ 원} \dots\dots\dots (1)$$

○ 신체보험료: 화재보험료의 10%

$$294,840 \text{ 원} \times 10\% = 29,484 \text{ 원} \dots\dots\dots (2)$$

○ 총보험료: (1)+(2)

$$294,840 \text{ 원} + 29,484 \text{ 원} = 324,324 \text{ 원}$$

예 10. 요리점, 무도장, 카바레(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30㎡ 이상인 건물)이 때

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건물내에 있는 경우 그 연면적은 2개 이상의 업종에 대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.)

소재지: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20
 건물구조: 세멘벽돌조 3층
 보험가입금액: 300,000,000 원

적용요건 { 물건: 일반물건
 등지: 3등지
 기본요율: 0.429%
 할증요율: 무도유흥음식점: 0.284%
 (카바레, 나이트클럽, 디스코 및 고고클럽 등)
 음식점: 0.142%

— 카바레 —

$$\begin{array}{|c|} \hline 0.429\% \\ \hline \text{(기본요율)} \\ \hline \end{array} + \begin{array}{|c|} \hline 0.284\% \\ \hline \text{(무도유흥음식점할증)} \\ \hline \end{array} = \begin{array}{|c|} \hline 0.713\% \\ \hline \text{(적용요율)} \\ \hline \end{array}$$

— 음식점 —

$$\begin{array}{|c|} \hline 0.429\% \\ \hline \text{(기본요율)} \\ \hline \end{array} + \begin{array}{|c|} \hline 0.142\% \\ \hline \text{(음식점할증)} \\ \hline \end{array} = \begin{array}{|c|} \hline 0.571\% \\ \hline \text{(적용요율)} \\ \hline \end{array}$$

○화재보험료:

- 1) 200,000,000 원 × 0.713% = 1,426,000 원 (카바레) (1)
- 2) 100,000,000 원 × 0.571% = 571,000 원 (음식점) (2)
- (1)+(2) = 1,997,000 원 (3)

○신체보험료: 화재보험료의 14%

1,997,000 원 × 14% = 279,580 원 (4)

○총보험료 (3)+(4)

1,997,000 원 + 279,580 원 = 2,276,580 원

예 11. 시장(도·소매 진흥업법(구 시장법)에 규정한 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)

소재지: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1가 10
 건물구조: 세멘 벽돌조 2층
 보험가입금액: 150,000,000 원

적용요건 { 물건: 일반물건
 등지: 2등지
 기본요율: 0.351%
 시장할증: 0.568%
 (중앙난방시설이 있는 경우)

○적용요율 산출

$$\begin{array}{|c|} \hline 0.351\% \\ \hline \text{(기본요율)} \\ \hline \end{array} + \begin{array}{|c|} \hline 0.568\% \\ \hline \text{(시장할증)} \\ \hline \end{array} = \begin{array}{|c|} \hline 0.919\% \\ \hline \text{(적용요율)} \\ \hline \end{array}$$

○화재보험료:

150,000,000 원 × 0.919% × 90% (특수건물할인 10%)
 = 1,240,650 (1)

○신체보험료: 화재보험료의 14%

1,240,650 원 × 14% = 173,691 원 (2)

○총보험료: (1)+(2)

1,240,650 원 + 173,691 원 = 1,414,341 원 (㉞)
 — 다음호에 계속 —

계산

○적용요율 산출

$$\begin{array}{|c|} \hline 0.429\% \\ \hline \text{(기본요율)} \\ \hline \end{array} + \begin{array}{|c|} \hline 0.284\% \\ \hline \text{(무도유흥음식점할증)} \\ \hline \end{array} = \begin{array}{|c|} \hline 0.713\% \\ \hline \text{(적용요율)} \\ \hline \end{array}$$

○화재보험료:

300,000,000 원 × 0.713% = 2,139,000 원 (1)
 (요리점, 무도장, 카바레는 특수건물할인 없음)

○신체보험료: 화재보험료의 14%

2,139,000 원 × 14% = 299,460 원 (2)

○총보험료:

2,139,000 원 + 299,460 원 = 2,438,460 원

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건물내에 있는 경우

1) 방화구획이 없는 경우(카바레와 음식점)

3층	카바레	1억
2층	카바레	1억
1층	음식점(300㎡)	1억

계산

○상기와 동일함(총보험료: 2,438,460 원)

주1) 1층 음식점인 경우 할증요율은 0.142% (3등지 3급)가 되나 2, 3층에 카바레가 있으므로 전체적용요율은 0.713%가 된다.

주2) 1층 음식점 부분의 면적이 130㎡ 이고 2, 3층 카바레 부분의 면적이 260㎡ 인 경우, 총면적이 390㎡ 이므로 특수건물이 되며 할증요율도 그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.

2) 방화구획이 있는 경우

계산

○적용요율 산출